

의안 번호	2498	[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제출 일자 : 2025. 11. 11.(화)
- 제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1. 11.(화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2.(화)

2. 제안이유

-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양육지원의 내용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출산축하용품 정의 신설(안 제2조제4호)
 - 출산축하용품: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
- 출산양육지원사업 내용 신설(안 제3조)
 - 출산양육지원사업: 출산양육지원금, 출산축하용품
- 조문 신설에 따라 기존 조문 번호 및 제목 변경(안 제3조의2)
 - (당초) 제3조(지원대상자의 범위)
 - (변경) 제3조의2(지원대상)
- 출산양육지원 내용 확대에 따른 조문 내용 변경(안 제3조의2, 제4조제1항 및 제3항)
 - (당초) 출산양육지원금
 - (변경) 출산양육지원사업
-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(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, 안 제5조제2항)
 - (당초) “영아” 라 함은, “출산양육지원금” 이라 함은, 첨부하여야

- (변경) “영아”란, “출산양육지원금”이란, 첨부해야
- 별지 제1호서식 변경 및 별지 제4호, 제5호서식 신설
 - 별지 제1호서식(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) 중 지방자치단체 서비스란에 출산축하용품 추가
 - 별지 제4호서식: 출산축하용품 신청대장(동보관용)
 - 별지 제5호서식: 출산축하용품 지급대장(구청용)

4. 근거법규
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제1항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외에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위해 제도 신설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임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제2조에 출산축하용품 정의 규정
 - 안제3조에는 기존의 출산양육지원금 외에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출산양육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
 - 그 외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출산양육지원사업으로 내용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(출산양육지원금→출산양육지원사업)
 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 -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따른 기존 신청서 변경 및 관련 대장 신설(별지 서식)
-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출산 장려분위기 조성 및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
- 상위법인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에 대한 시책 추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

-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근 거 법 규

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